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86262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redacted] 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redacted]군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1. 21. 선고 2017가단5361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3.

판 결 선 고 2018. 6.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B의 피고에 대한 지방세 환급 관련 청구 부분은 2018. 5. 2. 소취하(청구취지 감축)로 종료되었다.
2.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피고는 원고에게 27,117,648원과 그 중 23,527,0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그 소유의 [redacted] [redacted]군 E, F, G, H 토지(이하 'E, F, G, H 토지'라고 한다)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명칭과 달리 'J종중'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등기부에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I종중'으로 기재되었다.

(2) C은 2013. 1. 19.경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선임되어 위 종중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위와 같이 위 각 토지의 등기부 기재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2013. 8.경 I종중(이하 '가설종중'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로 취임한 다음 '가설종중은 위 각 토지를 B, A에게 각 매도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3) 이후 C은 위 회의록을 이용하여 2014. 3. 14. 자신의 아들인 B 앞으로 H 토지에 관하여 2014.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은 같은 날 원고의 곡교지점에서 H 토지에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로부터 4억 8,8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고 한다). 계속하여 C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2. 자신의 남편인 A 앞으로 E, F, G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A은 2014. 11. 13. 위 곡교지점에서 E, F, G 토지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고 한다). 이후 C은 위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2016.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노1202호. 2016. 8. 5. 확정).

(4) B은 2014. 3. 14.경 피고에게 H 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 합계 45,138,230원(취득세 19,625,320원 + 등록세 19,625,320원 + 농어촌특별세 1,962,530원 + 지방교육세 3,925,0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A은 2014. 11. 12.경 E, F, G 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 합계 2,740만 원(취득세 1,400만 원 + 등록세 1,000만 원 + 농어촌특별세 140만 원 + 지방교육세 2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이 사건 종중은 2015. 1. 30. B, A과 원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redacted]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67호)를 제기하여 2016.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85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6. 10. 12.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B, A은 항소하지 않아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B과 A은 2015. 9. 15.경부터 이 사건 1, 2차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7. 21. B을 상대로 이 사건 1차 대출원리금 4억 8,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4916호로 신청하였고, 그 신청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 원고는 2016. 7. 21. A을 상대로 이 사건 2차 대출원리금 340,227,77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4916호로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A이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5513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7. 4. 5.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원고는 2017.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의 피고에 대한 지방세 환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3020호)을 받았고, 2017.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의 피고에 대한 지방세 환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6109호)을 받았으며,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22.과 2017. 6. 26.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8) B은 2017. 10. 11. 피고에게 자신이 납부한 위 45,138,230원 전액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기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2018. 1. 11.에 23,351,270원(취득세 19,625,320원 + 농어촌특별세 1,962,530원 + 가산금 1,763,420원)을, 2018. 4. 20.에 25,659,930원(등록세 19,625,320원 + 지방교육세 3,925,060원 + 가산금 2,109,550원)을 각 환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A은 위 3필지의 수입리 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위와 같이 2,740만 원을 피고에게 자진납부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B이 납부한 지방세 관련 청구를 당심에서 취하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2)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지만,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은 수입리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바 없어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A은 피고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A의 신고·납부행위에는 과세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한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은 위 신고·납부 당시 자신이 C의 횡령 범행을 통해 수입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② A의 위 신고·납부행위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는 사실, ③ 피고가 B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B이 잘못 납부한 지방세를 이미 전액 환급하였고, A이 납부한 지방세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실(B의 신고·납부행위의 위법한 결과는 경정절차를 통해 이미 시정되었고, A의 신고·납부행위의 위법한 결과 역시 경정절차를 통해 시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A의 위 신고·납부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위 신고·납부행위의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A에게 위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3

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의 위 각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A의 위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B의 피고에 대한 지방세 환급 관련 청구 부분은 2018. 5. 2. 소취하(청구취지 감축)로 종료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경승

판사 강선아

판사 심현근